#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211

발의연월일: 2022. 11. 11.

발 의 자:정우택·김상훈·이인선

지성호 • 배준영 • 김학용

태영호 • 윤상현 • 서정숙

강기윤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제도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쌀 가격 하락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가소 득이 감소하였고,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하여 국내 농어업 분야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5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l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	
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